

##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(유가물)공고

우편법 제36조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8. 5.

제 주 우 편 집 중 국 장

### 1.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 내역

종 별	접수일 혹은 최초발견일	내용품	수량	등기번호	발송인	수취인	비고
유가물	2015.10.23.	옷(590g)	1	CP122953488 KR	w o u d i v o n solns	이사불명	보관
유가물	2015. 8.24.	옷,사탕등(2,643g)	1	CP134931808 KR	t a b i t h a reyndds	수취인장기부재	보관
유가물	2015. 9.10.	Grill pan(2,370g)	1	CP135033320 KR	seong sik oh	수취인장기부재	보관
이탈품	2016. 6. 4.	MOUNFIELD 아웃도어 하의(381g)	1	불명	불명	불명	보관
이탈품	2016. 7. 7.	위·십이지장궤양 치료제(53g)	1	불명	불명	불명	보관
이탈품	2016. 7.19.	월간조선(650g)	1	불명	불명	불명	보관

2. 청구기간 :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, 환부청구가 없을시 국고에 귀속됨.

3. 문의사항 : 제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회계계(☎710-5207~8)

### ※ 참고사항

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 있는 것이나(예: 골, 생선 등 부패성우려)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되,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합니다. 매각대금은 당해 우편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년내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며, 부패성 우려가 있는 우편물 중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